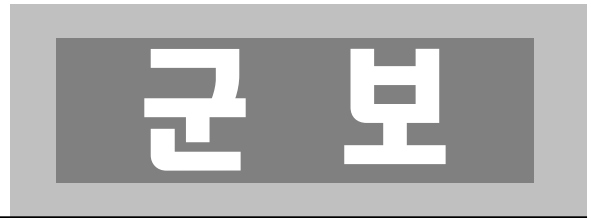




www.goesan.go.kr

제1211호 2026년 2월 6일(금)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괴산군조례 제3050호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2

○ 괴산군조례 제3051호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괴산군조례 제3052호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11

공 고

○ 괴산군 공고 제2026-170호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괴산군 공고 제2026-182호

「2026년 괴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 22

○ 괴산군 공고 제2026-192호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

기 타

○ 괴산군의회 공고 제2026-1호

괴산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34

회람							
----	--	--	--	--	--	--	--

발행 : 괴산군, 편집 : 기획홍보과(괴산군 괴산읍 임객정로 90) 830-3026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6년 2월 6일

괴산군조례 제3050호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6년 2월 6일

괴산군조례 제3051호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매체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차폐”란 사업대상지가 산,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제2항제4호 중 “1호와 2호”를 “2호”로, “가능하여 주요도로나”

를 “가능하여”로, “이를”을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⑥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1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의견 청취) ① <u>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제5조(주민의견 청취) ① <u>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매체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차폐”란 사업대상지가 산,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u> ② ----- ----- -----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삭제

4.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가 자연적인 지형 여건으로 차폐가 가능하여 주요도로나 주거밀집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신설>

③ ~ ⑤ (생략)

⑥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근에 입지할 수 없다.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의 수립)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4. 2호-----

----- 가능하여 -----

-----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

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

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

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

(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

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1. · 2. (생략) <u><신설></u>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u>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 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u> <u>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u> <u>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u>② · ③</u> (생략)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6년 2월 6일

괴산군조례 제3052호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로부터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괴산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사업) 군수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관리
3.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 배치
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안전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및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괴산군 공고 제2026-170호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괴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라 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하고자 함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증 가능 도서 범위 규정(안 제17조제5항)
- 도서관 상설운영위원회를 비상설운영위원회로 개정(안 제26조)

4. 개정근거

- 도서관법 제34조, 제45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5. 의견 제출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괴산군청 미래전략과 도서관팀

○ 전 화 : 043-830-3246, FAX : 043-830-3759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84 괴산군립도서관, (우편번호 28037)

○ e-mail : cbs2615@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조례 제 호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열람 수요가 감소했거나 활용 빈도가 낮아진 도서
2. 제적·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기증받은 도서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7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u> <u>1. 열람 수요가 감소했거나 활용 빈도가 낮아진 도서</u> <u>2. 제적·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u> <u>3. 기증받은 도서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u>
제2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u>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u>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 ⑥ (생략)	제2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 <u><삭제></u>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
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
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
다.

<삭 제>

<삭 제>

<u>제3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u> <u>참석한 위원에게는 「괴산군 각</u> <u>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u> <u>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u> <u>있다.</u>	<u><삭 제></u>
---	--------------------

「2026년 괴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2026년 괴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4일

괴산군수

1. 모집기간 : 2026. 2. 4.(수) ~ 2026. 2. 13.(금) 18:00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작성 후 참여업체 추천에 의해 최종 7명 선정
3. 모집분야 : 청년 창업, 창업 교육·컨설팅, 지역·로컬 활성화 관련 분야
4. 자격요건
 - 모집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서 접수 후 제안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26. 2. 13.\(금\) 18:00까지](#)
- 접 수 처 : 괴산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830-3215)
- 접수방법 : E-mail 접수(gonirider@korea.kr)
- ※ 제출서류 서명 날인 후 서류 전체를 파일 하나로 스캔하여 해당 파일을 제출
- ※ E-mail 접수 유무 확인 연락처 (☎ 043-830-3215)

7.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보안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평가위원 선정

- 일 자 : [2026. 2. 26.\(목\) 예정](#)
- 선정인원 : 7명(예비평가위원 2명 별도 선정)
- ※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추가 지정
-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천
 - 다빈도 순으로 결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만 유선으로 개별 통보

※ 단, 연락 불능, 불참 의사 표현 시 차순위자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3. 6.(금) 14:00 ~

○ 장 소 : 괴산군립도서관 3층 프로그램 1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사시 유선 통보

○ 내 용 : 제안설명(업체별 PPT 설명, 질의응답) 및 평가

10.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안서 평가일**
[2026. 3. 6.(금) 14:00]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참석자에게는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안은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2026년 괴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제안서 평
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괴산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830-32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 1부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폰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평가위원 활동경력								
기타사항								

위와 같이 「2026년 괴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등록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인적사항 ~ 3. 직장현황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직급기재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직렬 까지 작성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협회 등은 등급으로 기재
- 연구기관은 연구원, 학계는 정교수 등으로 기재

4.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최종학력만 기재

-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
-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

단,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

5.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평가대상 분야에서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7. 주요저서 및 논문은 최근 5년간 발표한 내용을 기재

8.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

9. 기타 관련분야 등 위원 선정에 필요한 자료 첨부(임의)

※ 상기 각 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붙임2]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괴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 사실 및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출시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가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5.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2026.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괴산군수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안서 평가위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2026년 과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제안서평가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2월 일			
동의인 : (인)			
과산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과산군이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괴산군 공고 제2026-192호

괴산군交通安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交通安全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괴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괴산군交通安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증액하고자 함.

3. 주요내용(별표)

- 지원금액 증액
* (기존) 10만원 → (변경) 20만원

4. 입법예고기간 : 2026. 2. 5.(목) ~ 2026. 2. 25.(수) <20일간>

5.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 전 화 : 043-830-3563, FAX : 043-832-3465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걱정로 90 괴산군청, (우편번호 28026)

- e-mail : tmddk0819@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2〉

괴산군조례 제 호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u>10만원</u> 이내의 재산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 ----- ----- ----- ----- <u>20만원</u> ----- -----.
<u>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	<u><삭 제></u>

괴산군의회 공고 제2026-1호

「괴산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3일



괴산군의회 의장

괴산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장애인복지문화센터 설치 등(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괴산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830-3605 FAX : 043-833-9986)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문화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창작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장애인복지문화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괴산군 장애인복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